

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9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9. 17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 조례안과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의거 현행 규정의 일부 조항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현행 기금의 조성 규정중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사하구지회(이하“구지회”라 한다)의 출연금 조성 규정을 삭제함.(안 제4조제1항제2호)
- 나.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 조례안 및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은 사하구 세입·세출 예산외로 관리함.(안 제8조제1항)
- 다. 적립기금 및 운용기금은 구금고에 예치·관리함.(안 제8조제2항)

3. 관련법령

- 가.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
- 나. 지방재정법 제29조
- 다.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 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 제2호를 삭제 한다.

제8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

- ①기금은 사하구 세입 · 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.
- ②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 · 관리하되 적립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· 관리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기금의 조성) ①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하구의 출연금 2. <u>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사하구지회</u> (이하“구지회”라 한다)의 출연금 3.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, 기타 수익금 <p>제8조(기금의 관리) ①적립기금은 사하구 세입·세출외 현금계좌에서 관리하며 운용기금은 별도 금융기관 등을 지정하여 예치 운영한다.</p> <p>②적립기금은 <u>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한다.</u></p> <p>③(생략)</p> <p>④(생략)</p>	<p>제4조(기금의 조성) ①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2. (삭제) 3. <p>제8조(기금의 관리) ①기금은 사하구 세입·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.</p> <p>②기금은 <u>구금고에 예치·관리하되</u> 적립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한다.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 <p>④(현행과 같음)</p>